

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

의 안	1801
변 호	

제출일자 : 2020. 12. 29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보고이유

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계획기간 : 2020년

나. 주요내용

- (1)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
- (2) 2019년(1차년도) 시행결과
- (3) 2020년(2차년도) 시행계획
- (4) 주요 성과지표 및 세부추진계획

3. 계획(안) : 붙임과 같음

4. 근거법령

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 ~ 제3항

□ 지역보건법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